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호 6432

제출연월일: 2024. 12. 1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획득하거나 연구단지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사업이 환경의 변동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6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연 구·시험·제작 및 인공우주물체의 발사·관제·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사업추진 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심사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 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 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

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법 시행 당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실시 중인 것은 제외한다)에 관한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법령과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3"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대상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의

개 정 안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 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 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 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 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 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 1.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구축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2.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사업
- 3.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 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 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체의 연구·시험·제작 및 인 공우주물체의 발사 · 관제 · 정 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 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 업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 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 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 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 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사업 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 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 산의 배분 · 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심사 대상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신 설>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변경 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실시하여야 한다.

-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
-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 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 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 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 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른 심사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